

## 어업경영과 세무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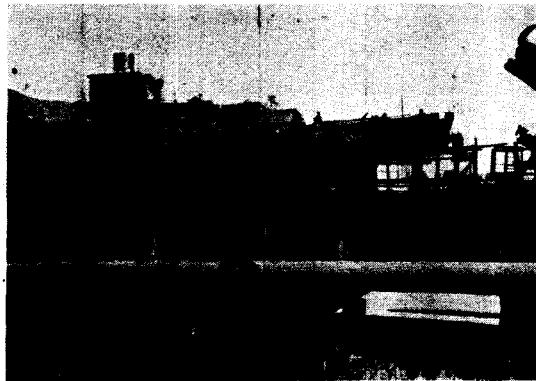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차 장 고 석 환

### (6) 어선의 과세가격기준

#### (가) 어선의 가격과 과세상의 재화가격

○ 모든 재화(財貨)의 가격은 그 재화의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량을 의미하며 가격은 시장구조를 통하여 생산을 위한 자원배분에서부터 유통망총족을 위한 소비행동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경제질서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작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선의 가격도 다른 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폐량으로 표현된 교환가치임에는 하등 다를 바 없으며 어선의 가격결정요인 역시 가격일반론에서처럼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곳에서 결정되지만 어선의 경우는 특히 생산요소의 가격이 시장가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특성을 지녔으며 또 주문에 의하여 생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요의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변동도 크게 될 것이고, 수요의 탄력성이 적을 경우에는 가격변동도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선의 수요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일치되어 균형가격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변동이 오게 되면 어선의 균형가격도 그에 따라 변동될 것입니다.

○ 세법에서는 재화의 가격에 관한 정의를 통일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있으나 세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어디까지나 시장가격을 존중하고 있으며 가격의 변동사항도 하등 이의없이 받아들여 그 때마다의 가격에 의거 과세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만 시장구조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시장가격



역시 명료하게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 때로는 과세필요상 인위적인 판단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선의 시장가격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은 과세상의 어선가격결정에 관한 판단기준은 세법에 근거하는 것인 바 세법도 각각 당해 징수세금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존중하다 보니 그들 나름대로의 가격결정기준을 각각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같은 어선가격이라도 과세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실지가액이나 시가(時價) 또는 칫가표준액 등 각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어선에 대한 각종 과세가격을 어선의 실제가격에 접근시키려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은 뚜렷합니다.

다음은 어선이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별로 어선가격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설명코자 합니다.

### (나) 세금종류별 어선가격의 결정기준

#### ① 취득세·등록세 부담에서의 어선가격

○ 어선을 새로이 전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하고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선의 새로운 전조에는 어선의 종류변경에 따라 어선의 가격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할 때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어선의 취득가액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이에 세율을 곱하여 곧바로 산출세액이 나올 수 있는 기준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어선취득자가 자진 신고하는 어선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어선취득자가 취득가액의 신고를 전혀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장·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어선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배를 건조한 조선소가 어선가격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어선취득가액이 외부에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때의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어선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조선소나 어선취득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외부에 전혀 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분 다음에 기술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해서 과세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선박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1月1日)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이 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선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선질별(船質別), 용도별(用途別)·기관(機關)의 종류 및 동력장치유무 등에 의한 전조가격에 경과년수를 참작하여 결정하는 바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합리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3.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

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의 종류는 강선, 목선, 목강선, 경금속선, 합성수지선(FRP), 시멘트선, 기타선의 7 가지로 분류

– 용도구분은 여객선, 일반화물선, 특수화물선, 유조선, 어선, 예선, 부선, 보트, 모터보트, 기타선의 10 가지로 분류

– 선박톤수에 따른 톤당 기준가액을 정하고 경과년수에 따라 이를 체감(遞減)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

– 무동력선의 경우 해당 과세표준액의 20／100을 감산.

○ 취득세나 등록세 부담에 있어 취득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연부가액으로 과세받고자 할 때에는 선박을 취득한 자가 미리 지방세당국(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어선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부담 중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나 재해복구로 인해서 새로이 전조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들 두 가지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재해복구어선중 재해된 어선톤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② 재산세 부담에서의 어선가격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는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세를 매년 빠짐없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도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그 부담이 면제됩니다.

○ 재산세 납부계산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은 납기개시일 현재 어선의 가격입니다. 그러나 어선의 가격은 재산세 납기 때마다 매년 계산하기란 계산기준도 문제이고 계산절차도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앞의 취득세부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어선취득자가 신고한 실제의 어선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의 원칙으로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을 예외로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는 실제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선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이미 하였고 여기서는 실례를 들

여 보기로 합니다.

산출공식 : (톤당가액 × 톤수 + 톤급별추가금액) ×  
잔가율 단, 트롤선, 저인망선, 선망선의 경우  
는 일반 어선의 10/100을 가산 함.  
※ 3년전 진수한 300톤 트롤어선(강선)의 과  
세시가표준액 ('85년기준)계산

종류 : 강선
용도 : 어선
- 톤당가액 : 1,033 천원
- 톤수 : 300 톤
- 톤급별 추가금액 : 4,200 천원
경과년수 : 3년(잔가율 : 0.562)

#### — 과세표준산출 —

- 일반어선과표 : (1,033 천원 × 300톤 + 4,200 천원) × 0.562 = 176,524 천원
- 트롤어선과표 : 176,524 천원 × 110/100  
= 194,176 천원

○ 위에서 어선의 톤수는 총톤수에 의하되 톤  
미만의 단수는 톤으로 계산하며 선령(경과년수)  
의 계산은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성립시기(취득  
세는 취득일, 등록세는 등기등록일, 재산세는 재  
산세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다만, 선령  
이 1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년(年) 미만의 단수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년(年)으로 계산하고 어선을 신조(新造)  
한 후 1년 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기준과표를  
적용함(기준과표는 잔가율을 1로 적용하여 산  
출한 것임). 그러나 선박의 진수년도를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최초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3  
년전을 진수년도로, 진수월일이 불명시는 진수  
년도 1월 1일을 진수일로 봄. 그리고 내용년  
수(12년)가 초과된 선박은 경과년수 최종년도의  
가액으로 함.

#### ③ 어선전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에서의 어 선가격

○ 국내에서 건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담: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그가 개인이든 법인이  
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고 과세사업자가  
어선이라는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어선공급가액  
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어선수요자  
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 때의 어선의 공  
급가액(여기서의 어선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가 포함되지 아니함) 즉 부가가치세법상 용어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바, 그 내용을 요약  
하면,

• 금전으로 어선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선소에서 어선공급을 위하여 투입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를 어선공급가액으  
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며,

• 어선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거나 전  
혀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선소는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를 기  
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조선소에서 어선가격에 대하여 공  
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  
한 경우에는 어선가액의 100 /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외국에서 수입한 어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외국에서 어선을 수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에는 판세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가액에 대한 10  
%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의 어  
선의 공급가액은 판세의 과세가격과 판세·특별  
소비세까지 합계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세판  
장이 징수합니다.

○ 위의 경우 할부 또는 연불로 어선을 구입하  
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어선가액을 지불키  
로 할 때마다 구분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어민은 사업자이긴 하나 기초  
식료품인 수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에 해당됨으로써 어선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는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고 따라서 이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선의 취득가액에 포  
함시켜 감가상각에 의하여 회수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 ④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이 되는 어선가격

○ 어선은 그 사용 또는 시일이 경과됨에 따  
라 그 가치가 감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선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일정한 한도의  
수명이 있으며 어선을 어업에 사용하므로 인한 마  
손은 물론이려니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  
는 자연적인 노후와 감손으로 점차 그 가치가 소  
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선의 가치가 감손

또는 소멸되는 것을 회계학상으로 감가상각(減價償却)이라고 하는바 감가상각을 하여 어선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선의 취득가액, 잔존가액 및 내용년수의 3 요소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취득가액이란 어선의 구입가격인 바 감가상각에서의 어선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을 함께 있어서 기초가액이 되는 것이고 동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어민의 사업소득계산에 있어 어선취득년도의 손익은 물론 각 사업년도에 배부하게 되는 감가상각비의 크기도 달라지게 되어 결국 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부담의 범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이 되는 어선의 취득가액 즉 어선가격에 대하여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어선의 취득가액을

-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당시의 대가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합니다. 어민의 경우는 어선구입시 부담한 부가 가치세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어선을 매입할 때 값을 인하하거나 할인 등을 하였을 때는 그것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매입대가는 매매거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정상가액에 의한 매매대가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를 취득가액은 장부에 기장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 감가상각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의 결정에 있어 문제인 것은 어선취득 후 이제까지는 감가상각을 전혀 계산해 오지 않다가 금후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하려고 할 경우 당초의 취득가액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개시시점의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나 하는 점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세법상 규정된 바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액이나 당시의 매매실례에 의한 시가를 취득가액으

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⑤ 상속세·증여세 부담에서의 어선가격

○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어선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어선가격은 세부담계산에 있어 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가액계산시 어선가격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으로는 상속세법에서는 평가의 일반원칙으로서 모든 재산은 상속개시시의 시가(時價)에 의한다고 하고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는 상속세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는 무엇보다도 평가하는 시기를 어느때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 평가시기(評價時期)에 관한 기준은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 평가액(評價額)에 관한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시가주의(時價主義)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어선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앞의 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부담계산시 설명하였듯 다시 설명하지 않기로 합니다.

- 시가(時價)란 어느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가격은 매매에 의하여 비로서 나타나고, 보유하고 있는 정치상태에서는 실제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가(時價)를 금전적계수로 표시하기에는 전문적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세무행정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현행 법률은 평가자나 평가기관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다만 국세청의 기본통칙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두고 있음을 부연코자 합니다.(다음호에 계속)